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0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63793 재산세및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재단법인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4구합21608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5. 11.
판 결 선 고	2016. 5. 18.

주 문

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.

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7. 10.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217,720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216,100원, 지방교육세 43,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03

제1심 판결 중 증여 받은 토지를 원고 고유목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유 부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

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상소는 자기에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될 수 없고,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(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).

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구한 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, 그 판결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제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, 원고로서는 새로운 처분이 여전히 위법함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).

2. 결론

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03

재판장 판사 김용빈

판사 김경환

판사 정승규